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90호 2012. 3. 20(화)

<b>조 레</b>
○ 사천시 조례 제996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
<b>규 칙</b>
○ 사천시 규칙 제510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6
○ 사천시 규칙 제511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27
<b>훈 령</b>
○ 사천시 훈령 제25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56
○ 사천시 훈령 제257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 81
○ 사천시 훈령 제258호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 ..... 85
<b>고 시</b>
○ 사천시 고시 제2012-18호 사천시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 86
○ 사천시 고시 제2012-3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 89
○ 사천시 고시 제2012-3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90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99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2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3)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소규모주택 수선 및 일련의 공사·작업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6.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철재류·농업용비닐·페스티로폼 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7. “폐기물포대”란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깨진유리·나무조각·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1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작한 포대를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개설·운영·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4)

11.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
1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5.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란 시 직영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16.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 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1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명령)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6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5)

여야 하고, 또한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환경감시원) ①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미화원, 환경단체 회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환경감시원 위촉·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집·운반)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 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위탁 재활용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단체포함)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분리배출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방법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1조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 마.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4. 제11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9)

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0)

## 제3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면 시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가 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따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제29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중 깨진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거나 시장이 재활용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폐기물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하게 하거나 수거 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 및 제작) ①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폐기물포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용기는 시장이 색깔, 문구,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폐기물포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1)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납부필증은 색상이나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하되, 위조 또는 재사용 방지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9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지정 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인구, 지역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2. 부정당 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 시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2)

한다.

- 제21조(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한다.
- ④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기준에 따른다.
- ⑤ 시장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2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공사장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포대에 담아서 배출
2. 배출자가 차량 등을 이용,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4.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제23조(공사장 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22조제2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등 성상별로 분리 배출 후 공사장 배출자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3)

가 최종 운반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차량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쓰레기봉투 판매 및 판매소 지정 등

제24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방법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이 조례를 위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6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2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자는 시장이 결정 고시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③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를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4)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판매자는 신고 된 판매소 이외의 장소 또는 이동하면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한 때
2.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외의 타 장소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때
5.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가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 때
7.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제6장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등

제28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제9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폐기물포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쓰레기봉투·폐기물포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납부필증의 제작비용
4. 적정 판매이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5)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③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봉투 및 마대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시에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된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어구류(폐그물)에 대하여는 자체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자체운반이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제28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4. 재활용품 및 가정에서 배출된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부과·징수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 후 그 무게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방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6)

납부필증 등을 판매하여 그 금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되 단지별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31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결정 고시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다량의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자
2. 일반인이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어구류(폐그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을 받는 사람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촉을 받은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7)

## 제7장 주민신고 포상금제

제34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무단투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3.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38의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영 제38조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8)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19)

[별표 1]

##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4.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0)

[별표 2]

##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골판지 등	○ 종이 이외의 부분(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우유팩, 음료수 팩, 종이컵	○ 이물질 제거 후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종이류와 함께 배출
고철·비철류	고철 (철사, 못 등 쇠붙이)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부탄가스 및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등 유리병	○ 병뚜껑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맥주병, 소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내열식기, 도자기, 사기그릇, 거울, 유리, 기름병, 화장품병은 제외
의류	면·섬유류 등 의류	○ 세탁 후 묶어서 배출(속옷 및 신발 제외) ※ 재활용가능한 의류는 재활용사업자(단체)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이불, 신발, 속옷은 재활용품이 아님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페비닐류, 페스티로폼, 그 밖의 플라스틱 재질 재활용가능 품목	○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폼·발포스티렌, 1회용 봉투·도시락·컵라면 용기, 과일상자내의 완충칸막이, 보호막은 제외
소형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시장이 고시한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아파트관리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배출
영농폐기물	페비닐류 및 농약용기류 ※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 페비닐은 개인 및 마을(단체)별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 ○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전용 수집용기 또는 포대에 넣어 배출
기타	폐형광, 폐건전지 등	○ 아파트관리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깨어지지 않게 배출(백열전구, 액상 축전지는 재활용품이 아님)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 공동주택, 마을, 단체 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배출하는 경우 품목별로 비닐, 포대, 그물망 등에 담아서 배출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1)

[별표 3]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기준

###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의 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산정
-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게 또는 부피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 2.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text{종량제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 \div \text{종량제방식별 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에 소요된 비용합계} \times 100$$

###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text{kg당(또는 } \ell \text{ 당) 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비용} \times \text{발생량} \times \text{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목표치)}$$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3)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지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⑬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⑭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⑮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⑯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 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4)

[별지 제2호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6)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1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20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7)

## 사천시 규칙 제51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20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명예환경감시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감시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와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8)

④ 감시원의 위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① 조례 제22조제2호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제1항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사천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자가운반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처리대장에 등재·관리한다.

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확인 후 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집·운반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지정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지정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 할 때에는 지역여건, 생활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운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29)

방지시설 등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고 갖추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행구역

2.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3.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사항

⑦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 및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의 추가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모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대행기간은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조례 제1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구역은 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 읍·면·동 또는 특정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는 사무실내 지정서를 게시하여야 하며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신청)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자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30)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 지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판매소지정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절차) 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은 규격에 따라 10매 또는 20매 단위로 포장하여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판매소 공급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위탁공급)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에게 위탁 공급할 때에는 처리비와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만 수납할 수 있다.

③ 민간인에게 위탁 공급할 경우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

제11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차량 폐기물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5호서식]
2. 일반차량 폐기물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 대형생활폐기물처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31)

②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소요량을 읍·면·동장에게 지급하고 읍·면·동장은 매월 5일까지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입원, 무단퇴거 등으로 무료 봉투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쓰레기 무료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시장은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등의 도구를 시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입, 배부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규칙 제4조, 14조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32)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

구 분	공 동 주 택	단 독 주 택
수 거 일	○ 매일 또는 격일	○ 매일 또는 격일
배 출 장 소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각 아파트 설치장소에 의함) 및 공동주택 자율결정	○ 각 단독주택 문 앞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 출 시 간	○ 매일 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수거전일 22시부터 ~ 수거일 04시까지
배 출 요 령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 설치지역에 한함) 또는 전용봉투에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 설치지역에 한함)에 배출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33)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					수수료	처리기한
					없	음
					즉시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배출자와의관계					
배출현황	배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배출자주소					
	배출 장소					
	폐기물종류		폐기물량		톤	수수료
자가운반계획	운반자성명		주소			
	운반 차량		운 반 량	톤		
	운반 기간		운반장소			
<p>「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호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또는 날인</span></p> <p>사천시장 귀하</p>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자가운반계획	운 반 차 량		운 반 량	톤		
	운 반 장 소		폐기물종류			
	운 반 기 간		수 수 료			
<p>「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호 및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p>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34)

[별지 제2호서식]

## 신 고 필 증

○ 접 수 번 호 :

○ 품 명 및 수 량 :

○ 처 리 수 수 료 :

○ 배 출 일 시 :

○ 배 출 장 소 :

상기 품명의 수량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필요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읍 · 면 · 동 장 (인)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35)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발생장소				
신고내역	품 목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p>「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 귀하</p>					
담당자 확 인	수수료산정	금 원( )			
	신고필증 발급번호	No.			
수 수 료					
증지부착					
참고사항	<p>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 제2항에 의한다.</p> <p>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p>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39)

[별지 제5호서식]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

상 호		소재지				
대 표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주택	
영업 종류		영업구역				

### 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	구역,면적 (주소,위치)	소유자 (관리자)	거 주 사 항		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	대 행 수수료	수 집 운반방법
			세 대 수	인 구 수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40)

[별지 제6호서식]

## 쓰레기 수집 · 운반 처리 실적 보고서

(전화번호 : )

년 월 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신 : 사천시청

발신 : 인

수 집 업소명	수집 운반량 (톤)			처 리 내 역				계약금액		
	운반 차량	대수	운반량	계	매립	소각	재활용	세대수	단가	금액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42)

[별지 제8호서식]

## 쓰레기봉투판매소 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월일	신 청 인		판 매 소		적합 여부	회시 일시	결 재		
		주소	성명	위치	성명			담당자	담당 주사	음면 동장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43)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조사서				결 재	담당자	담당주사	읍면동장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판매소 위치 (소재지)		상 호 (영업내용)				
판매대상지역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						
인근판매소와 의 거리	동	서	남	북	비고		
	m	m	m	m			
타당성 여부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						
조 사 자 종합의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44)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판매소 위치			
<p>「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p> <p>년 월 일</p> <p>사 천 시 장</p>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45)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제 호		
변 경 사 항		
지정연월일	상 호 및 명 의	확 인 (인)

영업상 유의사항

1.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54)

[별지 제19호서식]

## 감 시 원 증

(앞면)

(뒷면)

사진	제 호 <b>명예환경감시원증</b>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이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이 증명은 폐기물투기, 소각 등 환경감시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위 사람은 폐기물 불법투기, 무단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요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년까지)  20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85mm × 6 (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 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바탕색은 하늘색(색조건표 C40)임.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56)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5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3월 2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57)

【별표】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총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별 정 직	정 무 직	지 도 직	연 구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합 계	841	691	5	44	186	211	175	70	101	7	17	9	68	15	1	32	1
기획감사담당관	22	17		1	5	9	1	1	5	1			4				
전략사업담당관	12	12		1	4	5	2										
총 무 과	34	22	2	1	6	5	8		9	3		2	4	1	1		1
정보법무과	16	15		1	4	5	4	1	1				1				
주민생활지원과	24	23		1	5	8	7	2	1				1				
사회복지과	26	24		1	7	8	5	3	2		1		1				
문화관광과	24	22		1	6	9	5	1	2		1		1				
체육지원과	19	14		1	4	5	2	2	5	2			3				
환경보호과	19	17		1	4	6	4	2	2				2				
민원지적과	27	24		1	7	6	9	1	3				3				
세 무 과	28	25		1	9	10	5		3				3				
회 계 과	22	16		1	5	3	6	1	6		2	1	3				
지역경제과	19	17	1	1	5	8	1	1	2		1		1				
공단조성과	16	15		1	3	5	4	2	1				1				
해양수산과	22	17		1	4	5	7		5	1	3		1				
도 시 과	22	20		1	6	5	5	3	2				2				
건 축 과	22	21		1	4	7	8	1	1			1					
건 설 과	18	16		1	5	4	4	2	2				2				
재난관리과	21	17		1	5	4	6	1	4			3	1				
도로교통과	29	23		1	6	7	8	1	6		1		5				
녹지공원과	17	16		1	5	5	4	1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58)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기 능 직					별 정 직	정 무 직	지 도 직	연 구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의회사무국	17	12	1	2	3	2	4		5				5				
보 건 소	79	62	1	2	12	29	16	2	4		2	1	1	13			
농업기술센터	50	15		2	6	6	1		2				2	1		32	
환경사업소	14	8		1	2	2	2	1	6		1		5				
수도사업소	12	11		1	3	2	5		1				1				
하수도사업소	18	14		1	5	2	5	1	4				4				
신수출장소	2	2			1	1											
사 천 읍	22	21		1	5	4	8	3	1				1				
정 동 면	15	13		1	4	4	2	2	2				2				
사 남 면	15	14		1	4	4	1	4	1		1						
용 현 면	14	13		1	4	3	2	3	1				1				
축 동 면	13	11		1	4	2	3	1	2		1		1				
근 양 면	14	13		1	4	2	2	4	1				1				
근 명 면	14	13		1	4	2	3	3	1		1						
서 포 면	14	13		1	4	4	2	2	1				1				
동 서 동	13	13		1	2	2	1	7									
선 구 동	11	10		1	2	2	3	2	1				1				
동 서 금 동	10	9		1	2	2	2	2	1		1						
별 용 동	14	12		1	2	4	2	3	2				2				
향 촌 동	11	10		1	2	2	3	2	1		1						
남 양 동	10	9		1	2	1	3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59)

기획감사담당관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2		1	6	9	1	5			
일반직	소 계	17		1	5	9	1	1			
	행 정	8		1	4	3					
	시 설	2				2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녹지	1				1					
기능직	소 계	5			1			4			
	사 무	3						3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기 계	1						1			

전략사업담당관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2		1	4	5	2				
일반직	소 계	12		1	4	5	2				
	행 정	5			2	2	1				
	시 설	1					1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3		1		2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0)

## 총무과

직렬별		직급별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34	2	1	10	5	10	4	1	1	
일 반 직	소 계	22	2	1	6	5	8				
	행 정	17	2	1	6	2	6				
	행정+전산	2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1				1					
기 능 직	소 계	9			3		2	4			
	기 계	2			1			1			
	운 전	3			1		2				
	사 무	4			1			3			
연 구 직	소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 정 직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정 무 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 정보법무과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5	4	2			
일 반 직	소 계	15		1	4	5	4	1			
	행 정	1			1						
	행정+전산	5			1	1	2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전산+공업+방송통신	4				4					
	전산+방송통신	2					2				
기 능 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1)

## □ 주민생활지원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24		1	5	8	7	3				
일반직	소 계	23		1	5	8	7	2				
	행 정	5			1	2		2				
	사회복지	4			1	2	1					
	행정+사회복지	13		1	3	4	5					
	행정+독지+농업+해양수산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 □ 사회복지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26		1	7	9	5	4				
일반직	소 계	24		1	7	8	5	3				
	행 정	9		1	3	4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9			4	2	2	1				
	행정+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					2	1				
	행정+공업+해양수산+시설	1							1			
기능직	소 계	2				1		1				
	운 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2)

문화관광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4		1	6	10	5	2	
일반직	소 계	22		1	6	9	5	1		
	행 정	14		1	4	5	3	1		
	공 업	2				1	1			
	시 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기능직	소 계	2				1		1		
	기 계	1				1				
	사 무	1						1		

체육지원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6	5	2	5	
일반직	소 계	14		1	4	5	2	2		
	행 정	8			3	3		2		
	시 설	1				1				
	행정+시설	3		1			2			
	행정+농업+공업	1				1				
	행정+공업+시설	1			1					
기능직	소 계	5			2			3		
	기 계	1			1					
	운 전	1			1					
	사 무	1						1		
	위 생	1						1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3)

환경보호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9		1	4	6	4	4		
일반직	소 계			17		1	4	6	4	2		
	행 정			3				1	2			
	환 경			5			1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환경			6			2	3	1			
	행정+보건+환경			2		1	1					
기능직	소 계			2						2		
	사 무			2						2		

민원지적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27		1	7	6	9	4		
일반직	소 계			24		1	7	6	9	1		
	행 정			6			2	1	3			
	시 설			9			3	2	3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5		1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기능직	소 계			3						3		
	사 무			3						3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4)

**세무과**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8		1	9	10	5	3			
일반직	소 계	25		1	9	10	5				
	행 정	4		1	2	1					
	세 무	7			1	6					
	행정+세무	14			6	3	5				
기능직	소 계	3						3			
	사 무	3						3			

**회계과**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2		1	5	5	7	4			
일반직	소 계	16		1	5	3	6	1			
	행 정	9		1	2		5	1			
	행정+세무	2			1	1					
	행정+시설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1				1					
기능직	소 계	6				2	1	3			
	기 계	1						1			
	운 전	4				1	1	2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5)

지역경제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1	5	9	1	2	
일반직	소 계	17	1	1	5	8	1	1		
	행 정	7		1	4	2				
	공 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세무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기능직	소 계	2				1		1		
	운 전	1						1		
	사 무	1				1				

공단조성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3	5	4	3	
일반직	소 계	15		1	3	5	4	2		
	행 정	4			1	1	2			
	행정+시설	10		1	2	4	1	2		
	행정+공업+환경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6)

## 해양수산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5	8	7	1	
일반직	소 계	17		1	4	5	7			
	행 정	1				1				
	해양수산	6			2	1	3			
	행정+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6		1	1	1	3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1	1			
기능직	소 계	5			1	3		1		
	선박항해+선박기관	4			1	3				
	사 무	1						1		

## 도시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5	5	5	
일반직	소 계	20		1	6	5	5	3		
	행 정	4				1	3			
	시 설	9		1	3	1	2	2		
	행정+시설	6			3	2		1		
	행정+농업+시설	1				1				
기능직	소 계	2						2		
	사 무	2						2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7)

## 건축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4	7	9	1		
일반직	소 계	21		1	4	7	8	1		
	행 정	2			1	1				
	시 설	12			2	3	6	1		
	행정+시설	7		1	1	3	2			
기능직	소 계	1					1			
	조 무	1					1			

## 건설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5	4	4	4		
일반직	소 계	16		1	5	4	4	2		
	행 정	3			1	1	1			
	시 설	7		1	1	1	2	2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기능직	소 계	2						2		
	사 무	2						2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8)

## 재난관리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소 계	행 정									
총합계				21		1	5	4	9	2		
일 반 직	소 계	17		17		1	5	4	6	1		
	행 정	4		4			2	1	1			
	시 설	4		4			2		2			
	공 업	1		1					1			
	행정+전산	2		2				2				
	행정+시설	1		1								
	공업+시설	3		3					2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1	1					
기 능 직	소 계	4		4					3	1		
	운 전	1		1						1		
	통신+전화상담+전기	3		3					3			

## 도로교통과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소 계	행 정									
총합계				29		1	6	8	8	6		
일 반 직	소 계	23		23		1	6	7	8	1		
	행 정	6		6			3	1	2			
	시 설	4		4			1		3			
	행정+세무	1		1					1			
	행정+전산	2		2				2				
	행정+농업	2		2					2			
	행정+공업	1		1			1					
	행정+시설	3		3		1		2				
	행정+공업+농업	2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1				
행정+농업+시설	1		1			1						
기 능 직	소 계	6		6				1		5		
	방 호	1		1						1		
	운 전	1		1				1				
	사 무	3		3						3		
	위 생	1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69)

## 녹지공원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5	5	1	
일반직	소 계	16		1	5	5	4	1		
	행 정	3				1	2			
	녹 지	5			1	2	1	1		
	행정+녹지	3			1	2				
	행정+농업+녹지	5		1	3		1			
기능직	소 계	1					1			
	운 전	1					1			

## 의회사무국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2	3	2	4	5	
일반직	소 계	12	1	2	3	2	4			
	행 정	8	1	2	2	1	2			
	행정+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2			
기능직	소 계	5						5		
	운 전	2						2		
	사 무	3						3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0)

보건소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79	1	2	23	33	17	3			
일 반 직	소 계	62	1	2	12	29	16	2			
	기 술	1	1								
	보 건	18				10	8				
	의료기술	10				5	5				
	간 호	7				4	3				
	행정+보건	6			4	1		1			
	보건+간호	4			4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약무	8				8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보건+간호+의무	1		1							
기 능 직	소 계	4				2	1	1			
	운 전	3				1	1	1			
	사 무	1				1					
별 정 직	소 계	13			11	2					
	보건진료원	11			10	1					
	보건위생감시원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1)

□ 농업기술센터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50		2	6	7	1	2	2	30	
일 반 직	소 계	15		2	6	6	1				
	농 업	4			3	1					
	행정+농업	4			1	2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환경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기 능 직	소 계	2						2			
	운 전	2						2			
별 정 직	소 계	1				1					
	농기계교관요원	1				1					
지 도 직	소 계	32							2	30	
	농촌지도관	2							2		
	농촌지도사	30								30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2)

환경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소 계	공 업									
총합계				14		1	2	3	2	6		
일반직	소 계			8		1	2	2	2	1		
	공 업			1				1				
	환 경			1						1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기능직	소 계			6				1		5		
	운 전			6				1		5		

수도사업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소 계	행 정									
총합계				12		1	3	2	5	1		
일반직	소 계			11		1	3	2	5			
	행 정			2			1		1			
	환 경			3					3			
	시 설			2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보건+공업+환경			1					1			
기능직	소 계			1						1		
	기 계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3)

## 하수도사업소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5	2	5	5	
일반직	소 계	14		1	5	2	5	1		
	행 정	1			1					
	공 업	1					1			
	시 설	3			1		2			
	행정+시설	2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환경	3			1	1	1			
	공업+보건+환경+시설	1		1						
기능직	소 계	4						4		
	방 호	1						1		
	사 무	2						2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 신수출장소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			1	1			
일반직	소 계	2			1	1				
	행 정	1				1				
	행정+해양수산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4)

사천읍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5	4	8	4		
일반직	소 계	21		1	5	4	8	3		
	행 정	7					4	3		
	사회복지	1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농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4	2	4		
일반직	소 계	13		1	4	4	2	2		
	행 정	2				2				
	사회복지	3				2		1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농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기능직	소 계	2						2		
	방 호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5)

## □ 사남면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5	1	4		
일 반 직	소 계	14		1	4	4	1	4		
	행 정	4						4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1					1			
기 능 직	소 계	1				1				
	사 무	1				1				

## □ 용현면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3	2	4		
일 반 직	소 계	13		1	4	3	2	3		
	행 정	3				1	1	1		
	사회복지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기 능 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6)

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4	3	3	2	
일 반 직	소 계	11		1	4	2	3	1		
	행 정	2					1	1		
	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기 능 직	소 계	2				1		1		
	사 무	2				1		1		

곤양면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2	2	5	
일 반 직	소 계	13		1	4	2	2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기 능 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7)

곤명면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3	3	3	
일반직	소 계	13		1	4	2	3	3		
	행 정	3					2	1		
	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기능직	소 계	1				1				
	방 호	1				1				

서포면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4	2	3	
일반직	소 계	13		1	4	4	2	2		
	행 정	1				1				
	세 무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기능직	소 계	1						1		
	방 호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8)

동서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2	2	1	7		
일 반 직	소 계	13		1	2	2	1	7		
	행 정	5					1	4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선구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1		1	2	2	3	3		
일 반 직	소 계	10		1	2	2	3	2		
	행 정	3		1			1	1		
	세 무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기 능 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79)

동서금동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0		1	2	3	2	2		
일반직	소 계	9		1	2	2	2	2		
	행 정	5		1	1		2	1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2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벌용동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2	4	2	5		
일반직	소 계	12		1	2	4	2	3		
	행 정	2						2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기능직	소 계	2						2		
	사 무	2						2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0)

향촌동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1		1	2	3	3	2		
일반직	소 계			10		1	2	2	3	2		
	행 정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남양동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총합계				10		1	2	1	3	3		
일반직	소 계			9		1	2	1	3	2		
	행 정			3			1		2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기능직	소 계			1						1		
	사 무			1						1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1)

사천시 훈령 제257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3월 2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2)

[별표 1]

##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제3조 관련)

[총무국 소관]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 원 과	생활지원 담 당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4.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5.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충일 행사 등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 불우이웃 돕기(설·추석명절 위문)
		8.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9. 급여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1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지원 및 일반
		12. 보장결정, 중지에 대한 확정 및 통지
		13.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도
		14. 자활지원계획 관리 및 자활사업 관련 업무
		15. 생활안정자금 관리 및 운영
		16.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7.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8.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및 운영
		19.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
		20.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21.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보장 심의
		2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관리 및 운영
		23.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3)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	생활지원 담당	24.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 및 관리
		25.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및 대불금 관리
		26.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업무
		27.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 지원
		28. 중증진료 암 환자 등록 관리
		29.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30. 의료급여 사례관리
		31. 과내 서무·일상경비관리 및 보안 업무
		32. 과내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희망복지 지원담당
	2. 사회복지 공동모금 관련 업무	
	3.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구호양곡 및 구호물품 관리	
	6. 자원봉사계획수립 및 활동개발 운영	
	7. 자원봉사 단체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	
	8. 자원봉사자 육성에 관한 사항	
	9. 푸드뱅크 운영(1377전화)	
	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사업)	
	11. 콜센터 상담(연계) 및 사례관리	
12. 복지네트워크 운영 지도		
13.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14. 연말연시 이웃돕기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4)

부서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 원 과	희망복지 지원담당	15. 희망복지지원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업무 총괄 관리 (사례관리모니터링, 내방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16. 지역내 방문형서비스 총괄관리 등
	통합조사 관리담당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규대상자 소득·재산조사
		2. 신규 신청자 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3. 중점보호대상자 소득·재산조사 결과 서비스연계 의뢰
		4. 기초수급세대 가구원 전입, 변동에 따른 조사
		5.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6.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7. 보육료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8.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9.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10. 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11. 장애(아동) 수당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소득·재산조사
		12. 자활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변동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5)

## 사천시 훈령 제258호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3월 20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수도사업소 경비청경은 소내 청사경비, 공공하수관로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물 경비 등을 전담하며 하수도사업소장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근무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8호, 제4조제1항제7호, 제5조제9항 중 “주·정차 단속 청경”을 각각 “주·정차 순찰 청경”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제4조제1항제9호, 제5조제9항 중 “광고물 단속 청경”을 각각 “광고물 순찰 청경”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단속”을 “순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6)

##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2-1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2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관내에 설치된 가스시설 검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탁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검사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검사권한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7)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2.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검사권한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 3. 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검사권한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8)

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3조(검사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위탁받은 기관은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받은 기관에 있다.

④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탁 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권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제출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검사 신청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스관계법령과 지식경제부 고시, 지침 등에 따른다.

제3조(고시폐지) 사천시 고시 제2009-125호(2009.12.29)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89)

사천시 고시 제2012-3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 3. 13.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1-11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1년 12월 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어선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894-21번지선
5. 공사완료내역
  - PE부잔교 설치
    - 234㎡ [PE부잔교(3m×8m), 알루미늄 도교(0.8m×10m)]
6. 공사기간
  - 2011년 12월 22일 ~ 2011년 12월 31일
7. 점용·사용 승인(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2. 3. 13.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90)

사천시 고시 제2012 - 35호

## 도로명주소 고시

사천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사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외 32건

연 번	종 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목록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민원지적과 새주소담당(☎ 055-831-2320~3)에 문의 또는 사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2012. 3. 15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91)

[붙임]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목록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49	2012-03-15
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197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초량읍달길 22-83	2012-03-15
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666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19	2012-03-15
4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5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21	2012-03-15
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169-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금막1길 84-1	2012-03-15
6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436-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양월안길 20-172	2012-03-15
7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646-17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실2길 21	2012-03-15
8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261-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실길 65-28	2012-03-15
9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1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길 148-13	2012-03-15
1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17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길 150	2012-03-15
1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702-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흥신로 618-4	2012-03-15
1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작팔리 258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작팔1길 33	2012-03-15
1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작팔리 23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작팔길 324-73	2012-03-15
14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55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산길 16-1	2012-03-15
1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43-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길 148-8	2012-03-15
16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470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도동안길 33-5	2012-03-15
17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36-3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삼상로 901-1	2012-03-15
18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13-1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삼상로 977-49	2012-03-15
19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계양리 282-2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계양길 110-11	2012-03-15
20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462-4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181	2012-03-15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92)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21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326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928	2012-03-15
22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788-1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예동3길 168-28	2012-03-15
23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507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길 131-16	2012-03-15
24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435-1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2길 37	2012-03-15
25	경상남도 사천시 마도동 166	경상남도 사천시 저도길 17-28 (마도동)	2012-03-15
26	경상남도 사천시 마도동 166-1	경상남도 사천시 저도길 17-26 (마도동)	2012-03-15
27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172-4	경상남도 사천시 각산로 126 (대방동)	2012-03-15
28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23-2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5	2012-03-15
29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산16-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홍신로 572	2012-03-15
3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51-2, 15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골길 15	2012-03-15
31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783-14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474	2012-03-15
32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895-8, 895-7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78 (죽림동)	2012-03-15
33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11-7	경상남도 사천시 북개천길 71-2 (동동)	2012-03-15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93)

사천시 고시 제2012 - 35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 사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230 외 5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붙임 고시대상목록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민원지적과 새주소담당(☎ 055-831-2320~3)에 문의 또는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변경된 도로명주소는 2012. 3.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94)

[붙임]

## 도로명주소 변경목록

연번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1	사남면 방지리 202	사천시 공단2로 193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230	2012-03-15	건물분할에 따른 재부여
2	사남면 계양리 122-2	사천시 사남면 진분계 길 29-45	사천시 사남면 진분계길 29-47	2012-03-15	건물분할에 따른 재부여
3	별리동 464-10	사천시 문선1길 37	사천시 문선2길 13	2012-03-15	건물분할에 따른 재부여
4	곤명면 초량리 산434	사천시 곤명면 초량음 달길 22-89	사천시 곤명면 초량음달길 22-96	2012-03-15	건물분할에 따른 재부여
5	곤명면 초량리 436	사천시 곤명면 초량음 달길 22-89	사천시 곤명면 초량음달길 22-94	2012-03-15	출입구변경 에 따른 재 부여
6	곤명면 용산리 232-3	사천시 곤명면 용산마 을길 552-12	사천시 곤명면 용산마을길 552-10	2012-03-15	출입구변경 에 따른 재 부여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95)

사천시 고시 제2012 -35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사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3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임 고시대상목록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민원지적과 새주소담당 (☎055-831-2320~3)에 문의 또는 사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나,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사용 가능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0호(96)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목록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3	2012-03-15	건물멸실
2	경상남도 사천시 대포길 154	2012-03-15	건물멸실